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8. 27 선고 2021가단315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고인배, 백준현, 임경윤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169,389,945원 및 그 중 163,982,442원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1. 3. 8.까지는 연 10.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사천시 E 전 693㎡에 관하여 2020. 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D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8. 8. 20. 210,000,000원을 2018. 10. 14.부터 72개월간 분할상환하되, 연체이자율은 연 10.2%로 정하여, 같은 해 10. 1. 210,000,000원을 2018. 11. 14.부터 72개월간 분할상환하되, 연체이자율은 연 10.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2021. 2. 19.자 기준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대출일자	대출금	원금잔액	연체이자	합계	증거
1	2018.8.20	2억 1,000만	80,689,729	2,666,225	97,235,453	갑1-1
2	2018.10.1	2억 1,000만	83,292,713	2,741,278	100,638,729	갑1-2
	합계	-	163,982,442	5,407,503	169,389,945	-

나. 피고 C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채무를 보유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20. 2. 21.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천시 E 전 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거래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채권자	발생일	변동일	금액(원)
1	F 은행	2019.3.28.	2020.12.16.	1,000
2	G 캐피탈	2019.3.28.	2020.3.16.	86,846,000
3	H 캐피탈	2018.3.27.	2020.3.13.	54,407,000
4	I	2017.12.21.	2021.2.5.	225,506,000
5	신용보증기금	2020.9.17.	2020.9.17.	137,270,000
6	J 카드	2019.4.26.	2020.6.1.	57,866,000
7	경남신용보증재단	2017.1.6.	2019.7.1.	40,000,000
8	K 캐피탈	2017.12.21.	2020.5.27.	86,747,000
9	L 캐피탈	2018.10.22.	2020.7.6.	55,170,000
10	M 캐피탈	2018.11.5.	2021.1.18.	55,749,000
11	N 캐피탈	2020.9.4.	-	213,993,000
12	원고	2018.8.20.	2020.3.9.	163,982,000
	합계			1,177,537,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채무원리금 합계 169,389,945원 및 그 중 원금잔액에 해당하는 163,98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1. 3. 8.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로 정한 연 10.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D 역시 피고 C와 사이에 위 각 처분행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피고 D 역시 피고 C이 운영하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 3. 9. 접수 제5788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 D, 채권자 소외 O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의 가액과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200,000,000원, 소외 O조합의 피담보채권은 18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보다 더 적은 위 공동담보부분인 20,000,0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선주